

전기 사용 계약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이하 '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계약 번호	10-3095-3600		계약 종별	산업용(을)고압A
전기 사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삼파동 432-1		선택요금	선택요금III
변압기설비 용량	20000 KVA		공급방식	삼상4선(22.9kV-y)
사용설비 용량	0 kW		계량전압	22900 V
계약 전력	20000 kW		수급개시(예정)일	2023-12-31
수급자점	상시	강북아리수S1 2번단자개폐기고객측 전기 사용장소내에 우리회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		
	예비	강북아리수S2 3번단자개폐기고객측 전기 사용장소내에 우리회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		
전기 사용 계약기간	전기 사용 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 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비내역	변압기설비 : 동력1차변압기 20000 KVA 단독결선			

-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의 성립 및 전기 사용 계약 기간) 전기 사용 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 사용 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 사용 계약 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 중요내용 변경 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 사용 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 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 한계) 고객과 한전 간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자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 고객이 직접 선택하신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감),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감)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I)요금 또는 선택(II)요금을 적용하고,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I)요금, 선택(II)요금 또는 선택(III)요금을 적용합니다.
 - 고객은 전기 사용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금 특징
선택(I)요금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아 전기 사용 시간(설비가동률)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요금	기본요금이 다소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 사용 시간(설비가동률)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I)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 사용 시간(설비가동률)이 월 500시간 초과되는 고객에게 유리

- 고객은 전기 사용 기간 중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제공하는 선택요금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해당 한전 지사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요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선택요금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요금' 최초 적용시 또는 계약종별 변경 · 계약전력 증감 · 명의변경 · 업종변경 · 계절 또는 시간대구분 변경 ·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 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5·10 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해야 하는 등 기본공급약관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7. (기타 공급조건)

- 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기사용신청에 따른 인근 공급변전소 공급능력 검토 결과, 미금S/S의 22.9kV 대용량 주·예비 각1회선 인출하여 공급합니다.
- 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의 2(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①항 4에 의거 계약전력 14,000kw 초과 20,000kw 이하의 신증설 고객은 22,900V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 이외 세부기준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14조의 2 ①항 6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 라. 기본공급약관 제85조 ①항에 의거 전용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마. 공사착공 후 고객이 전기사용 신청사항 변경(선로구성 방식, 공급방식 변경 등) 또는 전기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한전이 투자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 고객은 수전시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 희망하는 시기에 전력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24조 ①항 3호에 의거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에는 3상 4선식 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상별 개별 변류기(3C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 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전력은 공급선별 수전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하며,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 합니다.
- 자. 기본공급약관 제24조 ②항에 의거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세부기준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에 따릅니다.
- 차.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및 "옥내의 사용전압과 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시설해야 합니다.
- 카. 고객은 고객 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 타. 고객은 수전시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시 희망하는 시기에 전력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번호 : 10-3095-3600

접수번호 : 5840-20230630-010119

《고객》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파동 432-1
성 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한전》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대리인 경기북부본부 남양주지사장



산업용전력 고객(고압)

아래는 고객님과 한전 간 전기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고객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일반사항

가. 전기사용신청 및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 고객이 전기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신청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의 납부를 보증하여야 합니다.
-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한전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수급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매매, 임대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나.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건물 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경우 전기수급거래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을 정해 그 전일까지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전은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공급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

-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던 고객이 해지사유를 해소하고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 설비로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① 해지후 1년 이내 : 해지기간중 기본요금 + 재사용수수료
※ 해지기간중 기본요금은 첫 회에는 청구를 보류하나,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사용하는 경우 청구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청구함. 단, 체납해지 기간 중의 기본요금은 면제
② 해지후 3년 이내 : 재공급 수수료 부담

- ③ 해지후 3년 초과 10년 이내 : 설계시설부담과 재사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
- ④ 10년 이후 : 신규시설부담금
- 해지 후 3년 이내에 해지 당시와 다른 공급조건으로 재사용 시에는 약관 제89조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라. 전기사용계약 기준

-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 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세칙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공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대표고객의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저압계량 고객의 경우 고객 희망시 고객소유로 최대수요 전력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전력결정 기준

-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입력의 합계에 계약전력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변압기표시 용량의 합계치로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 고객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기본공급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전기사용장소 내의 계약전력 합계가 1,000kW 미만일 경우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증설 후 계약전력의 합계가 150kW 이상일 경우 고객의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전기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공급합니다.
- 신설 또는 증설후의 계약전력이 40,000kW이하로서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2,9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능력 확보에 필요한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아.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현저한 고조파를 발생하는 경우 등 기본공급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서 정한 고객은 고객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역률의 유지

-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90%(이하 ‘기준역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기준역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 설비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대상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저압 : 계약전력 20kW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고객
 - ② 고압 :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및 임시전력 고객
- 역률요금은 9시부터 23시까지는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다음달 9시까지는 진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매 1%당 기보요금의 0.2%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 해달 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차. 위약금

- 고객이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으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공급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카.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약관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경과실로 약관 제47조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5·10배를 한도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타.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 고객과 한전 간 안전한 전력수급을 위한 전기설비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파. 전기요금계산 및 연체료

- 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고객이 납기일을 경과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합니다.
 - 처음 1개월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일수
 - 다음 1개월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일수
-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요금의 1%(1천원 한도)를 감액하며,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하여 요금을 청구하는 고객은 매월 200원을 감액합니다.

하. 요금의 보증

-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서 정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급개시, 재공급 또는 공급 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는 고객 중 신용이 우수한 개인 고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 기타사항

- 기설계약(154kV/15,000kV) 임시 유지를 위해 기존 고객번호(10-1622-0651)에 변경접수하지 않고 신규 고객번호(10-3095-3600)로 접수
- 국가주요시설로서 정전 예방이 크므로 22,9kV 전력공급설비 안정성 검증 후 154kV 계약해지요청

2.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산업용(갑)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요금(I) 또는 (II)를, 산업용(을)은 선택요금(I), (II) 또는 (III)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선택요금(I)은 기본요금 단가가 낮고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 월간 사용시간이 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하고, 선택요금(II)은 기본요금 단가가 높고 전력량요금 단가가 낮아 월간 사용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며, 선택요금(III)은 월간 사용시간이 500시간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 기본공급약관 별표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중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견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및 유수지 배수펌프장은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기사용 계약기간 중 휴지(休止)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휴지후 재공급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 1, 2, 7, 8,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합니다.
- 약관 제 68조 제 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①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②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소유한 경우)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한전은 첫 번째 초과한 달에는 초과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하여 초과요금을 부과하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예비전력은 고객이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전기요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기본공급약관 제7장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